

【 24 】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7. 4. 24.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제정이유

○ 도로법 시행령(대통령 제15,100, 1996. 7. 1)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를 폐기하고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절감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로관리심의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토록 함(안 제2조)

다.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
- (2) 도로점용관련사업의 시공방법 및 교통소통대책
- (3) 도로굴착 관련사업시설의 유지 관리
-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관련사업을 사전 심의·조정  
토록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 및 도로질서의 유지관  
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도로관리심의회(이하“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2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및 경찰서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및 도로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도 관련사업 유관부서
2. 국방부 산하기관( 군부대)
3.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4. 한국전력 산하기관
5. 의정부 경찰서
6. 기타 도로관련사업 유관기관

⑥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건설과 담당계장으로하고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관련사업의 시공방법·시공기간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 또는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심의회가 제3조 제4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안건의 송부) 관리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관리심의회 개최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허가를 신청중이거나 굴착공사를 시행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관리심의회 심의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편 건설 제 2 장 토목 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양주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1981. 1. 28]  
조례 제 732호]

개정 1982. 9.21 조례 제 863호

개정 1984. 2. 1 조례 제 966호

개정 1985. 3.12 조례 제1025호

개정 1989. 3.31 조례 제1255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 조정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구성) ①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군부대 포함한다)의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임명토록 한다.

④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도로 관련사업 유관부서
2. 건설부 산하기관
3. 국방부 산하기관(군부대)
4. 체신부 산하기관
5. 동력자원부 및 한국전력 산하기관
6. 당해 의정부 경찰서
7. 기타 도로관련사업 유관기관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제 4 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81. 1.28 조례 제 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양주군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9.21 조례 제 863호)

이 조례는 1982년 9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2. 1 조례 제 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12 조례 제10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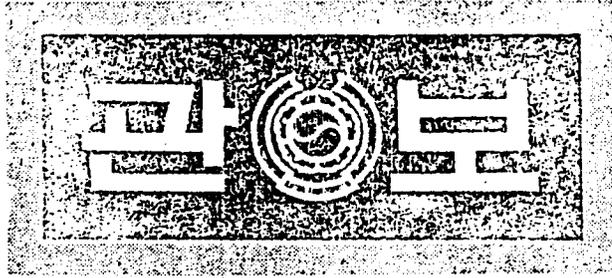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31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대한민국정부

권보는 공무원로서의 요격을 갖는다.



제13350호 1996. 7. 1. (월)

선 람	기 관 의 장

## 대통령령

- 대통령령제15,100호(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6
- 대통령령제15,101호(일반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15
- 대통령령제15,102호(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개정령).....33
- 대통령령제15,10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36
- 대통령령제15,104호(기부금품모집금지법시행령개정령).....39
- 대통령령제15,104호부칙에의하여폐지되는대통령령  
: 기부심사위원회규정
- 대통령령제15,105호(농어촌주택개량추진법시행령).....48
- 대통령령제15,106호(자연공원법시행령중개정령).....53
- 대통령령제15,107호(온천법시행령개정령).....57
- 대통령령제15,108호(용역경비업법시행령개정령).....61
- 대통령령제15,109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72
- 대통령령제15,110호(염관리법시행령개정령).....78
- 대통령령제15,111호(염업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85
- 대통령령제15,112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86

## 총리령

- 총리령제576호(관세청직원부제중개정령).....87
- 총리령제577호(신용관리기금법시행규칙개정령).....95
- 총리령제578호(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제7조).....99
- 에의한시장접근물량증량에관한규칙중개정령

## 부령

- 내무부령제684호(풍수해대책법시행규칙개정령).....100
- (이면 계속)

회 람									
--------	--	--	--	--	--	--	--	--	--

발행총무처 ( 편집 ☎ 720-4331 보급 ☎ 727-0611 )      1291-4A 1995.10.12. 승인  
 서울 중로구 세종로 77-6 ☎ 110-760      190 × 268 신문용지 18.8 g/m<sup>2</sup>

#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6년 7월 1일

국무총리 이 수 성  
국무위원  
건설교통부장 추 경 석

## ○대통령령 제15,100호

### 도로법시행령중개정령:

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로 하고, 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8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항에 제36호 및 제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7조제1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 및 건

한대행에 관한 사항

21의2. 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등의 다

른 시설의 연결허가

35.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

고의 접수

37.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제2항제36호 및 동항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을 "특별시·광역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제10조의2중 "서울특별시·직할시·시장 또는 군수가"를 "특별시·광역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청"이라 한다)가"를 "특별시·광역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3 내지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사업계획의 수립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도로망의 확충방향·목표 및 건설계획

제13350호

관

보

1996. 7. 1. (월요일)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소통대책
2. 제2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24조의4제1항중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를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2항)중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로 한다.

②굴착공사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점용위치·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요청받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설치위치 및 안전대책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굴착공사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결과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지점 및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는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직접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5 내지 제2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5(주요지하매설물)법 제4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사업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광역상수도과 동법 동조제8호 및 동조제10호의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중 관경이 700밀리미터이상인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의 전기설비중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간의 154,000볼트이상의 송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중 외경관경이 3미터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제24조의6(굴착공사의 시행) ①굴착공사시행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공사를 시행하는 지점 또는 그 인근에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공사의 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확인하여야 하며, 당해 굴착공사로 인하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굴착공사시행자에게 굴착공사의 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관리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시행자에게의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제원등에 관한 설명
2.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의 이행 및 현지여건에 따른 그 변경등의 필요성 여부의 확인
3. 기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호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굴착공사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4조의7(준공도면의 제출) ①법 제4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면에는 매설물의 위치·종류·규격·재질등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주요지하매설물등의 전기통신관·송열관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실수요자용 공급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준공도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의8(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①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입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24조의9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관리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의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24조의9(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속국도 : 정부부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의 집행간부
2. 일반국도 :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군도·구도 :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관리심의회 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24조의10(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 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11 내지 제24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1(관리심의회 의 회의) ①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관리심의회가 제24조의8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24조의12(소심의회)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중 소심의회 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 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4조의13(수당)관리심의회 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14(운영세칙)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 의 운영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관허사업의 제한)관리청이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및 신고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3350호

관

보

1996. 7. 1. (월요일)